

문서번호	마을담당관-7400
결재일자	2015.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민참여담당	마을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이금선	박해열	한재현	김병환	10/26 김영배	
협 조					
	정무보좌관		윤정배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성북구 위원회 정비 지침



성 북 구
(마 을 담 당 관)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성북구 위원회 정비 지침

법령·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중 회의실적 저조 및 유사·중복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초래하는 위원회는 폐지, 통·폐합 등 정비를 통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 행정자치부(2015.9월)

II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위원회 수] 2014.12월 기준 115개, 민선5기 이후 지속적 확대
- 86개(2010년)⇒104개(2012년)⇒107개(2013년)⇒115개(2014년)
- [설치근거] 법령 60.9%, 조례 30.4%, 기타 8.7%
- [회의개최] 2014년 총 425회로 위원회별 평균 3.6회 개최
- [기타] 위원 수는 총 1,421명으로 위원회별 평균 12.3명 구성

■ 문제점

○ [실적 저조]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수의 25.7%(34개), 최근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11.4%(15개)

-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현황

연번	소관부서	위원회 명	근거	설치년도
1	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	법령 (강행)	1989
2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위원회	법령 (강행)	1999
3		평생학습협의회	법령 (강행)	2006
4	주택관리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법령 (강행)	2006
5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법령 (강행)	1989
6	도로시설과	보상협의회	법령 (강행)	2007
7	안전치수과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법령 (임의)	2005
8	기획예산과	업무평가위원회	법령 (강행)	2005
9	일자리경제과	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조례 (임의)	1994
10	행정지원과	구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법령 (강행)	1988
11		성북구외국인시책 자문위원회	조례 (강행)	2009
12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규칙 (강행)	1999
13	자치행정과	지명위원회	법령 (강행)	1988
14	홍보전산과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강행)	1998
15	의약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법령 (강행)	2009

○ [유사·중복] 유사·중복기능 수행 위원회 다수 존재, 비효율 증대

○ [권한 남용] 법령·조례상 기능과 권한을 넘어선 심의·의결 등

III

위원회 정비 방안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 3년간 미개최	⇒ 폐지
	· 1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 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독자존속 필요시 통합 후 분과위 편제)
	·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 미개최 · 비효율	⇒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행자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1] 미개최 위원회

■ 3년간(2012~2014년간) 미개최

- [정비방안] 자체적 폐지
- [절차] 지자체 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개정 또는 폐지
※ 예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임의),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임의)

■ 1년간('14년) 미개최

- [정비방안] 해당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제출
- [절차] 위원회 기능필요성에 대한 자체 검토 후, 활성화 또는 정비

② 비효율 위원회

■ 기능이 유사 · 중복되는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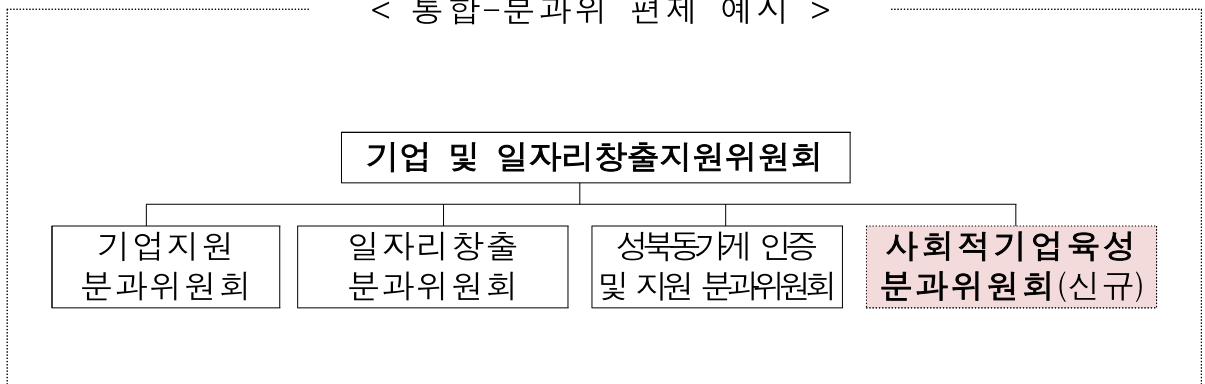
- [정비방안]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 · 폐합
 - ※ 법령에 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 규정을 둔 경우, 해당 법령에 통합에 관한 별도규정이 없는 한 통합 불가
- [절차]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필요
 - (의무설치 위원회에 통합) 의무설치 위원회의 명칭 사용, 의무설치 위원회의 근거 조례상 기능 보강 및 통합 관련 규정 신설

※ 예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강행)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임의) 기능을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위원회 근거 조례 개정

- (임의·조례위원회 간 통합) 조례에 통합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정비유형] 단순 통 · 폐합 또는 통합 후 분과위 구성
 - 원칙적으로 단순 통 · 폐합 추진
 - 다만, 독자적 심의가 필요하여 단순 통폐합이 곤란한 경우,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하위 분과위원회로 편제
 - * 동일 위원회에서 수행 가능하지만, 다른 안건과 구분 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

※ 예시: 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조례)에 사회적기업 육성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조례)를 통합하여 하위 분과위원회로 재편 추진

< 통합-분과위 편제 예시 >



■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 [폐지] 목적 달성, 수요 해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설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폐지
- [존속기한 설정]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최대 5년)**을 조례에 명시

※ 예시: 성북구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 운영조례상 존속기한 규정

< 개정 전 >	< 개정 후 >
제7조(설치및기능) 구청장은...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설치및기능) 구청장은...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를 둔다. <u>제7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신설)</u>

- [협의체 전환]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을 주로 심의하여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
- ※ 예시 : 표창·포상 관련 공적심의,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등 부단체장, 실국장, 소속 공무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 [비상설화] 제도적 절차, 주민 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 주민투표청구 심의, 주민 생명·안전·건강 관련 심의, 민원신고 관련 심의 등

※ 예시: 성북구 건강도시기본조례상 건강도시운영위원회 비상설화 개정

< 개정 전 >	< 개정 후 >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자문을 위해...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좌 동> <u>④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u>

③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 [정비대상] 3년간(2012~2014년간) 미개최 또는 비효율적 운영 위원회
- [정비방안]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법령개정 건의[붙임3 서식]
- [절차] 지자체에서 정비계획 제출, 행자부에서 해당 위원회 소관 부처에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요청 및 협의 추진

※ 예시(국토부 소관) : 도시개발법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간정보구축관리법상 지명위원회 등

IV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실화

① 위원회 신설 여부 사전검토 강화

- [사전협의] 신설 위원회 소관 부서는 위원회 총괄부서와 협의 철저
- 위원회 신설 시 사전협의절차 의무화(절차)



- [사전운영] T/F형태로 사전운영 후, 실적을 토대로 신설여부 검토
- ※ 법령상 강행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위원회 신설은 예외

②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위원 수] 위원회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범위한 분야의 위원 참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수는 20인 이내로 규정
- [회의 방식]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및 출석회의(화상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내용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 회의 일정·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통보(긴급비공개 사유 제외)
- [권한 준수] 자문위원회의 법령·조례상 기능 및 권한 준수 철저

V

추진일정

- 성북구 위원회 정비 지침 수립: 2015. 10월
- 성북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2월
-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제출
 - 2015. 11. 11.(수) 限 해당 전부서 ⇒ 마을담당관
- 정비결과 제출: 매년 1월, 7월(주관부서⇒마을담당관)

- 붙임: 1) 2014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 1부
2)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 제출서식 1부
3) 위원회 관련 상위법령 개정 건의 양식 1부
4)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 1부 끝.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 제출서식

□ 위원회 정비계획

구분	위원회 수		감축 수				비상설화	존속기한 명시
	정비 전	정비 후	소계	폐지	통폐합	협의체 전환		
계	A	A-B	B				C	D
부서별								
⋮								

※ A는 '14.12월 기준, B~D는 정비대상 위원회 수

□ 의무설치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요청

구분	위원회 명	설치근거 (법령명)	소관 부처	최근 3년간 개최실적	정비 방안	검토의견
계					폐지/임의규정화	정비사유 등
부서별						
⋮						

□ 감축계획 위원회 세부현황

구분	위원회 명	설치근거	정비 방안	검토의견
계			폐지/통폐합/ 협의체 전환	정비사유 등
부서별				
⋮				

□ 비상설화·존속기한 명시 위원회 세부현황

구분	위원회 명	설치근거	정비 방안	검토의견
계			비상설화/존속기한 명시	정비사유 등
부서별				
⋮				

위원회 관련 상위법령 개정 건의양식

1. 00법 개정요구

● 위원회 관련 현황

현행 법령	서울시 정비의견	대상위원회	소관부처 및 주관부서 연락처, 홈페이지

● 세부 법령 개정요구안

▮ 제1안 : 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화

기 존 법 령 안	개 정 요 구 안
①	①

▮ 제2안 : 유사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 존 법 령 안	개 정 요 구 안
①	①

▮ 제3안 : 비상설화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 존 법 령 안	개 정 요 구 안
①	①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

- 운영부서명 : 과·담당관
- 위원회명 :
- 설치근거 :
- 설치필요성 :
- 설치목적 :
- 위원회 성격 : 자문() 심의() 의결()
- 위원회 기능 :
- 구성인원 : 당연직(00명), 위촉직 (00명)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인원 명(%)
 - 장애인 및 장애인 분야 전문가 인원 명(%)
- 위원회 존속기한 :
- 위원임기 :
- 위원 해촉기준 :
- 위원자격 :
- 유사 위원회 설치 여부 : 유·무 (위원회명 :)
- T/F 회의체 운영실적
 - 운영실적(있을 경우)
- 설치 부서 의견